

**전문건설공제조합 – 해외건설협회  
업무제휴 협약서**

**甲 : 전문건설공제조합**

**乙 : 해외건설협회**

## 전문건설공제조합 – 해외건설협회 업무제휴 협약서

본 업무제휴 협약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해외건설협회(이하 "을"이라 한다)가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세부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1조 (협약원칙)

- ① "을"은 "을"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정보, 정책, 제도, 홍보 방안 등을 "갑"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.
- ② "갑"은 "을"이 제공하는 각종 해외건설 관련 정보 및 정책지원을 활용하여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.

### 제2조 (해외건설 관련 정보제공 및 보증지원)

- ① "을"은 "을"이 보유한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등 해외건설관련 각종 수주·발주정보를 전산매체, 간행물 등의 형태로 "갑"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.
- ② "을"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"갑"의 주요업무, 정책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"갑"이 전문건설업체의 해외보증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·지원 한다.
- ③ "을"은 "갑"이 해외보증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회원사, 해외보증 유관 기관(정책금융기관 등)과의 업무연계 등을 통해 보증알선 등을 지원하기로 한다.

### 제3조 (해외지부 활용)

- ① "갑"은 "을"이 운영하는 해외지부에 해당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- ② 제①항에 따라 "갑"은 "을"의 의사결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외지부 파견예정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전에 "을"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"을"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해외지부 활용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"을"은 최대한 호혜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"갑"에게 청구하기로 한다.

#### 제4조 (해외 홍보활동 참여)

- ① “을”은 “을”이 주관·시행하는 아래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“갑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협력한다.
  1. 해외발주처 및 금융기관 홍보를 위한 해외 시장조사단 파견
  2. 해외 주요 발주처 초청 설명회(GICC)
  3. 해외진출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
  4. 기타 “을”이 추진하는 각종 홍보활동 및 행사
- ② “갑”은 제①항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해외보증 확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한다.

#### 제5조 (해외공사 사업성평가 제도)

- ① “갑”은 전문건설업체의 해외보증 심사를 위해 “을”이 운영하는 해외공사 사업성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해외공사 사업성분석을 “을”에게 의뢰하고, 그 결과를 보증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的 사업성평가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“을”的 『해외공사 사업성 평가업무처리규정』에 따른 절차 및 규정을 따른다.
- ③ “을”은 사업성평가제도의 활용 촉진을 위해 “갑”에게 최초 3회에 한하여 사업성평가 수수료율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. (협약 체결 후, 즉시 적용)

#### 제6조 (정책개발·지원 사업 등 공동 참여)

- ① “을”은 해외보증·금융지원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“갑”에게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며, 참여키로 결정한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.

#### 제7조 (교육프로그램 활용)

- ① “을”이 운영중인 해외건설 교육프로그램 중 “갑”的 요청이 있는 경우 “을”的 비용으로 각각 3명 이내의 “갑”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6회에 걸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.
- ② “갑”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해외건설 관련 “을”的 임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경우, “을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.

**제8조 (정보이용료 납부)** "갑"은 "을"이 지원하는 해외건설 관련 각종 수주정보, 사업성 평가제도, 정책, 교육, 홍보 등과 관련하여 "을"에게 정보이용료를 아래와 같이 매년 2회(반기납) 납부하기로 한다.

구 분	내 용	비 고
납부 금액	50,000,000원(V.A.T 별도)	연간 납부액 기준
납부 주기	- 1회차 : 25,000,000원(매년 10월초에 납부) - 2회차 : 25,000,000원(매년 4월초에 납부)	2018년 10월 ~ 2019년 9월까지 적용

### **제9조 (협조사항)**

- ① "갑"과 "을"은 이 협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기로 한다.

**제10조 (협약의 효력 및 자동갱신)** 이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다만, 제12조(협약의 해지)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.

### **제11조 (추가협약의 체결)**

- ① "갑"과 "을"은 이 협약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기로 한다.
- ② 제①항에 의한 추가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이 협약과 추가협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협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.

**제12조 (협약의 해지)** "갑" 또는 "을"이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**제13조 (기타사항)**

- ① 기타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"갑"과 "을"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- ② 이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"갑"과 "을"이 기명날인한 후, 각 1부씩 보관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협약에 따른 정보이용료 납부로 연회비는 면제키로 한다.  
또한, 정보이용료 미납시 본 협약의 효력은 자동상실한다.

2018년 9월 11일

전문건설공제조합  
이사장 유대운



유 대 운

해외건설협회  
회장 이건기



이 건 기